

연금시장리뷰 5호

노후불안 시대의 연금개혁 과제 (2)*

차 례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 김 동 열 연구위원 (3669-4112, dykim @hri.co.kr)

* '노후불안 시대의 연금개혁 과제'는 2회로 나누어 연재됨 (제1회 12월7일, 제2회 12월21일)

□ 노후불안 시대의 연금개혁 과제 (2)

3. 연금개혁의 해외 사례 : 스웨덴 vs. 프랑스

(스웨덴의 선제적이고 성공적인 연금개혁)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불리던 스웨덴은 '가상확정기여'(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형 연금제도 및 민영화된 '개인사회보장계좌'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 부담을 크게 덜어낸 성공적인 개혁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가상확정기여'(NDC)형 연금이란 형식상으로는 종전의 부과형(Pay-As-You-Go)시스템이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가상적으로 개인구좌를 설정하여 본인이 기여한 금액에 비례하여 받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기여(DC)형과 동일하다.

보험료 18.5% 중 16%는 '가상확정기여'(NDC)형 연금에 불입하고, 나머지 2.5%는 개인별 구좌를 통해 민간금융회사인 600 여개의 뮤추얼펀드 중에서 5 개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부분적인 민영화를 도입하였다.

또한, 70 세까지 일할 경우 연금 급여의 157%를 받도록 설계함으로써, 복지병도 예방하고 재정의 건전성도 제고하였다.

스웨덴의 연금규모가 GDP 대비 27%(120 조원 가량)에 달함에 따라, 하나의 투자전문기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4 개로 나누어 서로 경쟁하게 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프랑스의 대중적이고 미완성의 개혁) 프랑스는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했던 '90 년대에 연금의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93 년, '96 년, '99 년, 2003 년 잇따라 연금을 개혁하였다. 그러나, 재직자에게 부과하고 징수하여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Pay-As-You-Go)을 유지하는 한 대중적이고 미완성의 개혁에 그치게 된다.

프랑스의 경우 수차례의 대중적인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성적인 연금재정 적자에 처해 있으며, 2000 년의 경우 GDP 의 0.6%인 약 100 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연금지출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 년에 12.6%에서 2040 년에 16.3%로 늘어날 전망이다.

4.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과제

첫째, 향후 20 년의 연금정책은 '보험료'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가 아니라 '노후 보장'에 적절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즉, 연금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만 매몰된 지난 20 년이었다면, 향후 20 년은 연금의 '적절성' (Adequacy)을 확보하고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적절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해외/대체투자의 비중을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

셋째, 연금 기금의 지나친 비대화와 증시 불안정에 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기금규모는 2008 년 말에 250 조원으로 세계 5 위의 연기금으로 성장했으며, 2040 년경에는 2,400 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커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대화는 채권수익률, 금리, 주가 등 각종 금융시장 지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120 조원의 기금을 4 개로 쪼개서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처럼 우리도 연금기금의 운용을 분리 경쟁시켜, 리스크는 분산시키고 수익률은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3. 연금개혁의 해외 사례 ¹: 스웨덴 vs. 프랑스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90년대 이후 저출산, 고령화, 조기퇴직 등으로 연금적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연금개혁이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하는 '90년대에 접어들어 현 세대가 지난 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부과식 제도(PAYG; Pay-As-You-Go²)로는 연금재정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됨
-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제고하기 위한 연금 개혁을 추진함

3-1. 스웨덴의 연금개혁 (선제적/성공적 개혁)

○ (NDC 형 연금 및 부분민영화)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불리던 스웨덴은 '가상확정기여'(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형 연금제도 및 민간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개인사회보장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연금개혁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4년여의 토론과 여론수렴 끝에 1998년 연금개혁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1년부터 부분적인 민영화 시스템을 도입함
 - 종전의 '부과식'제도(PAYG; Pay-As-You-Go)에서 '가상확정기여'형(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으로, '필요한 만큼 지급하는 제도'(확정급부형; DB 형)에서 '기여한 만큼 지급하는 제도'(확정기여형; DC 형)로 대전환함으로써, 부담금(사회보장세)을 올리지 않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함
- '가상확정기여'형(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이란 형식상으로는 종전의 부과형('PAYG')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가상적으로(장부상으로만) 개인구좌(personal account)를 설정·계상한다는 점에서 확정기여(DC)형과 동일함
 - 소득의 18.5%(근로자 9.25%, 사용자 9.25%)를 차지하는 보험료 중에서 16%는 종전과 같이 현재의 재직자가 내는 기여금을 현재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 (PAYG)으로 운영하지만, 급여액 계산방식을 재직기간이나 소득기준 보다는 '기여금액'에 비례하도록 설계함

¹ 주 OECD 대표부("선진국 연금개혁 동향과 우리에게 대한 시사점", 2005.1)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리함.

² 재직자로부터 부과 징수하여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개인사회보장구좌제도의 신규 도입) 위의 보험료 18.5% 중 나머지 2.5%는 별도로 떼어내, 2001년 1월부터 민영방식으로 개인별 구좌를 신설함. 개인은 민간금융회사인 600여개의 뮤추얼펀드 중 5개를 선택 ➡ 부분 민영화

< 표 8. 스웨덴 연금의 역사 >

- ▷ 1913년 적립방식 전국민 연금 시작
- ▷ 1935년 부과방식으로 전환('Pay-As-You-Go')
: 대공황 당시 세금을 올리지 않고 연금지급액을 높이기 위해 부과식으로 전환함.
- ▷ 1946년 기초연금 도입(국가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원)
- ▷ 1960년 소득비례 연금제도 도입(기존의 기초연금에 추가하여 2원화)
- ▷ 1998년 NDC(가상확정기여)형 연금개혁법안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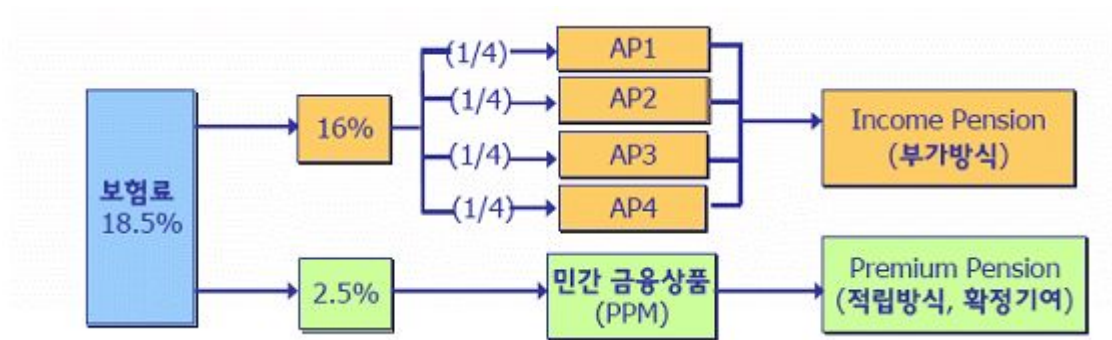
○ (스웨덴 연금개혁의 평가) 대중적이고 미봉적인 개혁이 아니라 '가상확정기여(NDC)형 연금'과 '연금운용의 부분 민영화'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 근원적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개혁에 반대하던 젊은 세대들을 "연금에 기여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설명으로 설득해냄으로써 '세대간 갈등'을 해소함
- . 아울러, 개인의 책임(근로자 기여율 1% → 9.25%)을 강조한 대신 정부는 여유가 생긴 재정으로, 최저보장연금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일을 오래할수록 연금이 후해지는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복지병도 예방함
: 퇴직연령별 연금수혜 : 61세 72% / 65세 100% / 70세 157%

○ (연금을 4개로 분리, 경쟁, 수익률 제고, 리스크 분산) 스웨덴의 연금적립규모가 GDP 대비 27% (120조 원 이상)에 달함에 따라, 하나의 투자전문기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4개로 나눠 서로 경쟁하도록 함. 이를 통해 수익률은 제고하고, 리스크는 분산하는 효과를 노림 (아래 <그림 6> 참조)

< 그림 6. 스웨덴의 기금분리 사례 >



자료 : 강성원(2007.11).

3-2. 프랑스의 연금개혁 (대중적/미완의 개혁)

○ (프랑스의 연금제도) 공적 연금제도는 재직자에게 부과, 징수하여 퇴직자에게 직접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Pay-As-You-Go) 시스템

- 연금 수령액은 65 세 이상 노인소득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3 개의 일반연금과 28 개의 지역별 특별연금이 상존하는 복잡한 제도. 연금 공공지출이 2000 년 GDP 의 12.6%에서 2040 년 16.3%로 전망되며, 2000 년 공적 연금의 지출규모는 1,648 억 유로로서, GDP 의 0.6%인 약 100 억 유로 적자 (2040 년 4.7% 적자)

○ (2003 년 개혁의 추진경과) 2003 년 7 월 '라파랭' 정부의 연금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최초의 연금개혁을 마무리함

- '93, '96, '99 년에 이은 개혁으로 연금적자 심화에 따른 교육지책을 실시함

- 전국단위의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2003 프랑스 경제사회위원회(전국단위 노사단체 참여)'에서 연금개혁안이 이슈가 되었으며, 프랑스의 5 대 전국노조는 동 개혁안에 반대하고, 4월 3일(검은 화요일) 이후 5 차례의 대규모 파업 발생
- . 2003년 5월 18일 연금개혁안 각의 의결, 2003년 7월 2일 프랑스 하원, 연금개혁안 채택 (389 : 132)

○ **(2003년 개혁의 주요 내용) 프랑스의 2003년 개혁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9>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음**

< 표 9. 2003년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납입기간 : 현행 37.5년 → 2008년 40년(공무원 연금) → 2020년부터 42년(공무원, 민간 동일) ▷ 연금 부담률 : 현행 소득의 7.85% → 10.35%(2008년) ▷ 퇴직 연령 : 현행 60세 → 65세로 연장

○ **(2003년 개혁의 평가) 2003년 7월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부담을 늘리는 개혁안이 통과된 것은 그만큼 개혁이 불가피했기 때문임**

- 연금개혁안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기득권 계층의 반대로 입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줌. 연금개혁이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보여줌
- . (라파랭 총리) 모든 의견은 받아들이지만, 모든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격을 가함
→ 전 가구에 편지를 보내, 연금개혁을 아이들 세대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며, 대안이 없음을 강조했다.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면 대응 (특히, 2003년 4.3일 검은 화요일, 50만명의 노동자 참여, 대중교통 마비)
- . (쥐페 총리) '95년 당시 '알랭 쥐페' 총리는 고압적 자세로 버텼으나, 1개월 가량의 전국적인 장기파업으로 맞선 노동계에 굴복하여 개혁안을 철회 → '97년 총선에서 패배

4.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과제³

4-1. 향후 20 년은 정책의 포커스를 연금의 '적절성' 개선에 맞춰야 함

○ 1988 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보험료 3%, 소득대체율 70%)된 이래 20 년 동안 보험료는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내리는 과정에서 연금의 '적절성'이 많이 후퇴했으며, 반면 재정의 건전성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향상됨

- 제도적 안정성은 지난 20 년에 걸쳐 충분히 확보되었으므로, 앞으로 20 년은 '기금의 적절성'(Adequacy)을 제고하고, 노후소득의 보장성을 제고하는데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함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크게 인하되었으므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현재의 5%에서, 10%(2028 년), 15%(2033 년)까지 점차 높여가야 함(※ 연간 약 50 조원의 예산이 필요)

< 표 10. 기초노령연금 연도별 수급대상자 및 소요예산 추계 (단위: 억 원/경상가격) >

구 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28 년
노인인구(만명)	502	519	535	645	782	992	1,119
수급자 수(만명)	301	363	363	408	490	581	629
A 값(만원)	167	171	175	267	353	461	540
연금액(만원)	8.4	8.6	8.8	13.4	17.6	23.1	54.0
총계	22,002	34,133	34,880	59,726	94,235	146,620	370,783
총소요예산							
국고	15,841	24,576	25,114	43,003	67,849	105,556	266,964
지방비	6,161	9,557	9,766	16,723	26,386	41,054	103,819

자료 : 보건복지부 (국회 제출자료, 2007.8).

주 : 1. 연금액 및 총소요예산 : '08~'27 년 A 값의 5%, '28 년 A 값의 10%로 가정하여 추계.

2. A 값은 '08 년 잠정추계, '09~'12 년 중기재정추계, '13~28 년 장기재정추계를 각각 적용함.

3. 국고지원율은 평균 72% 가정하여 지방비 추계.

4-2. '기금운용 수익률'의 제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

³ 확정급여(DB)형 연금을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하는 등의 근본적 개혁방안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놓았음.

○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2007 년 연금개혁'으로 선진국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소득 대체율(40%)이라는 큰 희생을 감수했으므로, 향후에는 '기금운용 수익률'의 제고에 집중해야 함

-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당기 적자를 기록하는 2044 년까지 남아 있는 35 년이라는 여유 기간에 기금운용의 체계를 개선하고,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제고함으로써, 보험료 인상 없이 기금 소진연도를 최대한 늦춰야 함

. 아래 <그림 7>은 우리나라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88 년 1 월부터 '09 년 9 월까지의 누적 평균수익률은 6.8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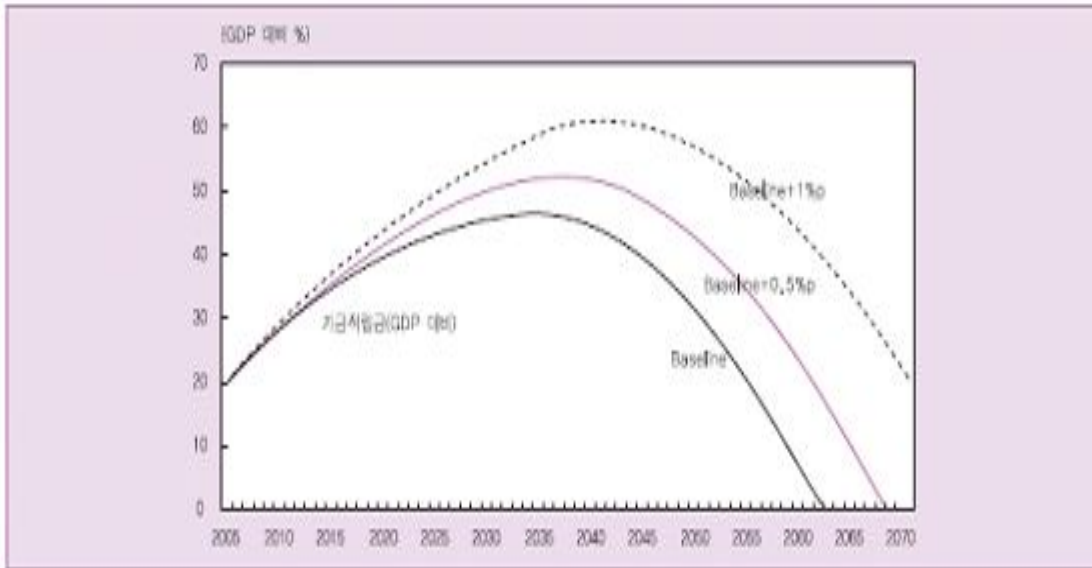
< 그림 7. 국민연금기금의 연도별 수익률 현황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http://www.nps4u.or.kr/fund>).

- 아래 <그림 8>은 기금운용수익률이 1%p 증가하면(점선의 경우) 기금의 소진연도를 Baseline 에 비해 10 년 정도 미룰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장기재정추계의 '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수익률이 1%p 올라갈 때 기금 소진연도는 9 년 정도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됨

< 그림 8. 기금운용수익률에 따른 기금적립금의 변화 >



자료 : 정호원(2008.2).

4-3. 주식/해외/대체투자 등으로 다양화해야 수익률은 제고되고 리스크는 분산됨

○ (주식/해외/대체투자 비중 늘려야)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채권' 중심의 자산배분을 '주식/해외/대체투자' 등으로 다양화해야 함

- 아래 <표 11>, <표 12>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연금기금의 자산배분이 국내/채권투자(안전자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식투자'와 '해외투자', '대체투자' 등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11. 공적 연금의 기금투자 비중 (주식/채권, 국내/해외) >

연금 체계	국가	연금(기준 연도)	국내 주식 비중	국내 채권 비중	해외 주식 비중	해외 채권 비중
부분적립식 DB	일본	국민연금,후생연금(2003)	23.4%	51.4%	14.1%	8.1%
적립식 DB	캐나다	CPP(2003)	35.2%	45.8%	10.3%	0.0%
부과방식 NDC	스웨덴	Income Pension (2003)	20.1%	19.0%	38.7%	18.2%
부분적립식 DB	한국	국민연금(2003)	6.4%	79.0%	0.0%	0.0%

자료 : 각국의 공적 연금 관련 웹사이트 (한성윤(2007.4)에서 재인용).

주 : DB(확정급부형), DC(확정기여형), NDC(가상 확정기여형).

< 표 12. 국민연금의 연도별/부문별/상품별 운용 현황 >

(단위 : 억 원, %)

구 분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07.12	'08.12	'09.08
합 계	759,091	930,552	1,125,676	1,332,769	1,562,829	1,822,142	2,120,067	2,377,500	2,517,743
공공부문	307,847	301,989	152,512	63,770	-	-	-	-	-
(증감%)	-10.8	-1.9	-49.5	-58.2					
복지부문	6,325	5,259	4,397	3,752	3,145	2,576	2,138	1,993	1,778
(증감%)	-11.7	-16.9	-16.4	-14.7	-16.2	-18.1	-17.0	-6.8	-10.8
금융부문	442,232	620,489	965,770	1,261,851	1,556,151	1,815,936	2,114,265	2,371,745	2,510,639
(증감%)	74.2	40.3	55.7	30.7	23.3	16.7	16.4	12.2	5.9
채권	385,910	564,129	887,913	1,147,555	1,417,524	1,626,405	1,764,546	1,819,211	2,018,245
-국내	385,219	562,433	882,054	1,107,864	1,294,983	1,462,741	1,587,844	1,732,803	1,925,067
-해외	691	1,696	5,859	39,691	122,541	163,664	176,702	86,408	93,178
주식	39,297	50,415	70,951	101,306	124,356	161,388	290,642	450,001	386,670
-국내	39,297	49,515	69,451	98,006	118,056	149,634	238,728	350,835	274,632
-해외	-	900	1,500	3,300	6,300	11,754	51,914	99,166	112,038
정기예금	-	-	-	5,500	-	2,000	2,000	-	-
대체투자	-	455	2,405	4,378	7,471	21,524	53,220	85,676	97,524
단기자금	17,025	5,490	4,501	3,112	6,800	4,619	3,857	16,857	8,200
기타부문	2,687	2,815	2,997	3,396	3,533	3,630	3,664	3,762	5,326
(증감%)	5.3	4.8	6.5	13.3	4.0	2.8	0.9	2.7	41.6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

주 : 매입가 기준. 해당월 말일기준의 누계실적이며, 증감률은 전년도 12 월말 기준 대비.

○ (SOC 사업, 공공임대아파트 등 '대체투자' 늘려야) 위의 <표 12>에서 '대체투자'의 비중이 4%내외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데, 국채수익률 이상이 보장되는 SOC 사업과 도심형 임대아파트사업, 실버타운 등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투자상품의 다변화와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대체투자'를 늘려야⁴ 함

- 향후 급속히 확대될 사회복지 수요에 맞춰 공공성을 충족하면서도, 수익성이 비교적 높게 예상되는 '노인요양시설'(실버타운) 투자 및 운영, '국민건강센터' 건립 및 운영(건강보험과 연계), 도심형 임대아파트 보급 등이 유망한 사업 분야가 될 것임

- 예를 들어, 도심의 중소형 임대아파트 공급은 중산층과 젊은 직장인들의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음은 물론, 연금기금의 수익성 제고 및 리스크 분산에도 기여할 것임

⁴ 강신욱 외(『미래 한국의 사회정책의 구성』, 한국노동연구원, 2007.4), P.147 참조.

- 그러나, 주식투자 및 해외투자의 비중 증가는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겠지만 아울러 '리스크'도 커진다는 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개별기업의 주식보유 한도 등도 감안해야 함('스웨덴의 투자지침서(IPS)'(박스) 참고)

※참고: 스웨덴 AP펀드(AP1~AP4)의 투자지침서(IPS) (2001.1.1.부터 발효)

- 자산의 최소 30%는 低위험의 채권에 투자
- 非상장증권에의 투자는 자산의 5%가 상한
- 外換의스포저(exposure) 한도는 40%
- 주식투자 비중은 스웨덴 전체 주식시가 총액의 2%가 상한
- 스웨덴 개별기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 의결권의 10% 초과 보유 금지
- 자산의 최소 10%는 위탁운용

- (독립적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 아래 <표 13>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기금운용기구를 설치한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웨덴 등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매우 높았음

< 표 13. 국가별 연금의 수익률, 주식편입비중, 독립운용기구 설치여부 비교 >

	연평균 수익률 (‘03~‘06)	주식편입 비중 (2006년 말)	독립 운용 기구 설치 시기
캐나다 펜션 플랜 (CPP)	10.6%	63.0%	1999년
아일랜드 국민연금 펀드 (INPRF)	13.5%	77.1%	2000년
뉴질랜드 연금펀드 (NZSF)	15.0%	60.0%	2003년
스웨덴 (제 1~제 4) 국민연금 (The 1st~4th Swedish N'tl Pension)	14.1%	60.0%	1999년
한국 국민연금 (NPS)	6.8%	11.6%	(?)

자료 : 각 연금 홈페이지 (강성원(2007.11)에서 재인용).

- 아일랜드와 스웨덴은 정치적 목적의 투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했으며,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기금의 100%를, 아일랜드는 기금의 85%를, 스웨덴은 자산의 28%를 민간 전문운용기구에 위탁했음

4-4. 기금의 분리·경쟁

○ (기금 분할로 증시 불안정 대비) 아래 <표 14>처럼 국민연금은 2008 년말 세계 5 위의 250 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2040 년경에는 2,400 조원(GDP 대비 48%) 까지 증가할 전망

- 국민연금 기금의 지나친 비대화가 '채권 수익률', '금리', '주가' 등 지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이므로 국민연금을 분리 경쟁시켜, 수익률 제고와 리스크 분산의 효과를 노림
- . 스웨덴은 연금의 적립규모가 120 조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4 개의 연금펀드(The 1st-2nd-3rd-4th Swedish National Pension)로 분리 경쟁시키고 있음

< 표 14. 연도별 기금적립 규모와 GDP 비중 추이 (단위: 10 억 원, %) >

연도	국민연금 적립기금	비중 (적립기금/GDP)
1988	528	0.4
1993	7,688	2.6
1998	37,702	7.8
2003	112,568	15.5
2008	248,133	25.2
2010	325,294	28.4
2015	575,098	36.1
2020	923,985	42.4
2025	1,304,447	47.3
2030	1,738,946	49.9
2035	2,131,048	51.0
2040	2,413,567	48.2
2045	2,440,482	41.6
2050	2,110,154	30.7
2055	1,286,378	16.2
2060	-214,225	-2.3

자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8.19).

김동열 연구위원 (3669-4112, dykim@hri.co.kr)